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접촉자 Q&A

접촉자

접촉자 범위 설정 기준

- 접촉자의 범위는 시·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
-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, 노출력(접촉장소, 접촉 시간 등)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전부터 범위 설정

○접촉자 범위 선정

- 유증상자 : 증상 발생 1일전부터
- 무증상자 : 검체 채취일 기준 1일전부터

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 의료진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 여부

-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 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.
-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 대응팀이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, 체류기간, 노출 상황 및 시기(확진 환자와 최종 접촉일 14일 이내)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.
- 개인 보호구 범위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) 7-3판 부록 p18 참고

접촉자의 조치

- 확진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
→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
- 보건소장 → 접촉자 본인에게 자가격리통지서 발부
- 생활수칙 안내 및 1:1로 담당자 지정 운영
-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
→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 확인

자가격리 시 주의 사항

- 자가격리자는 **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**,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,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
- 공용화장실, 세면대를 사용 시
 - 사용 후 소독(락스 등 가정용소독제) 후 다른 사람 사용
-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
 - 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
 -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
 - 식사는 혼자서 할 것
 -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 및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

주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조치

- 지자체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시설 또는 병원 격리 조치함

자가격리 시 생활지원 여부

-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, 유급휴가 등 지원

*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 문의

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 법적 처벌 기준

- 격리에 협조하지 않고 검사 및 격리, 치료 거부 시
 - (현행) 300만원 이하의 벌금
 - ('20.04.05 시행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제79조3항 2020.04.05부터 시행

외국인인 경우 자가 격리중 무증상으로 본국 출국 요청 시

-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
 - 증상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할 수 없음

확진 환자 이동경로 확인

-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'심각'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
확진환자의 동선
→ **지자체 홈페이지에 확인가능 합니다.**
- **증상발생 1일전부터** 확진 환자와 시간적 · 공간적으로 감염을 고려하여
장소 공개
- 환자의 개인정보 - 공개 안함
- 접촉자는 개별 연락 조치 및 방역 조치 시행

※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→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→ 발생 동향 → 시도별 발생 동향 →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

※ 제주확진환자 이동 경로 ⇒ 제주도청 홈페이지

→ 코로나19상황실 바로 가기 → 브리핑 자료

확진 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안내

<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·접촉자관리단, 2020. 3. 14.>

1. 공개범위

① 공개 대상 : 감염병환자

○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(법 제2조제13호)

② 공개 시점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

③ 공개 범위

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, 법령상의 제한,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

○ (개인정보) 확진자 동선공개 시 **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**

*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('20.3.9)

○ (시간)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

*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

○ (장소 · 이동수단) 확진자의 접촉자*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
- 시간적,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

※ 동거생활, 식사, 예배, 강의, 노래방, 상담 등 비말(침방울)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

*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, 체류기간,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

- 거주지 세부 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
 - * 단,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
-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,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,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
 - * (건물) 특정 층 또는 호실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, 특정 시간대 등
 - * (상호)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(도로명 주소 등) 확인
 - * (대중교통) 노선번호, 호선 · 호차 번호, 탑승지 및 탑승일시, 하차지 및 하차 일시

-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
- *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

출처

질병관리본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대응 지침서 7-3판 Q&A 게시판

(2020.03.15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격리 및 격리 해제 Q&A

격리 및 격리 해제

동일 집단 격리(코호트 격리)는 무엇인가요?

- 동일집단격리(코호트 격리)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(코호트)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, 병동의 개념이며,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,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

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코호트 영역에 배치해야 하나요?

- 동일집단격리(코호트 격리)는 전파 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.
-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

무증상 양성자의 격리 해제 기준

- 확진 후 7일째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
- 확진 후 7일째 PCR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
검사 주기(10일째, 14일째 등)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
-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 합니다.

동일 집단 격리(코호트 격리) 해제 기준

- 확진 환자 코호트 격리 중 확진 환자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.
- 단, 다른 환자들이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.

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

-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는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,
- 임상 기준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, 검사 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합니다.
- 임상 기준이 부합하면 검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가능하나, 격리 해제는 검사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
출처

질병관리본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**대응 지침서 7-3판 Q&A 게시판
(2020.03.15)**